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함
- 나.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안 제7조)

나. 기구개편

- 1)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분과
 -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둠(안 제8조제1항)

2)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

- 안전재난과는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두고 건설과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둬(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다. 사무분장

1) 청소년 및 청소년 수련관 업무를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둬(안 제7조제2항)

2) 기타 업무분장 명확화

-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중 강변체육공원 조성 개발 업무 삭제(안 제19조제4호가목 및 마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13년 1회 추경시 예산 반영

1) 기구조정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를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의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 위생과”로 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립공원 및 동락공원 관리

제19조제4호마목 중 “동락공원, 강변체육공원”을 “동락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총무과”를 “총무과, 안전재난과”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 위생과”로 한다.

②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안전과장”으로 하고,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위생과”를 각각 “환경안전과”로 한다.

③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로 한다.

④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를 둔다.	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
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의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u>환경위생과</u> , 시민만족과를 둔다.	제8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u>환경안전과, 위생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소관사무)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	4. -----

사무소	-----
가. <u>도립공원, 동락공원 및 강</u>	가. <u>도립공원 및 동락공원 관</u>
<u>변체육공원 조성·개발</u>	<u>리</u>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u>도립공원 및 동락공원, 강</u>	마. ----- <u>동락공원</u> --
<u>변체육공원</u> 시설물 유지 보	-----
수	
바. ~ 자. (생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생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13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직급·부서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주요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6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 나. 안전분야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정원증원등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2013.1.28)」에 따라 공무원 직급별 1인당 평균인건비를 산출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 나. 물건비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2012. 7월)에 따라 산정하고 기구신설에 따른 사업 예산은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 경상적경비를 위주로 추계한다.
- 다.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가.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조정할 경우 2013년 1,981,824천원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10,331,267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소계(a)						
세출	인건비	1,799,439	1,849,823	1,901,618	1,954,863	2,009,599	9,515,342
	물건비	182,385	158,385	158,385	158,385	158,385	815,925
	소계(b)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 총 비용(a-b)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장정수
연락처	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 및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가. 공무원 정원을 16명을 증원하고 2개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나. 1인당 인건비 기준은 「13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고 매년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다. 물건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2개과 신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등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추정하였다.

【직급별 기준액 산출】

<단위:천원>

직급	일반직				기능직				비고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액	67,581	58,616	37,564	30,849	67,581	58,636	38,923	32,464	

나. 산출내역

○ 인건비

구분		인원	산 출 내 역
계			1,799,439천 원(연간소요액)
정원 증원	일반 직	16	○ 소계 : 880,857천 원 - 5급 : 83,145천 원 × 2명 = 166,290천 원 - 6급 : 67,581천 원 × 4명 = 270,324천 원 - 7급 : 58,616천 원 × 6명 = 351,696천 원 - 9급 : 30,849천 원 × 4명 = 92,547천 원
직급 조정	일반 직	19	○ 소계 : 503,905천 원 - 7급 → 6급 : (67,581천 원 - 58,616천 원) × 2명 = 17,930천 원 - 9급 → 6급 : (67,581천 원 - 30,849천 원) × 7명 = 257,124천 원 - 8급 → 7급 : (58,616천 원 - 37,564천 원) × 1명 = 21,052천 원 - 9급 → 7급 : (58,616천 원 - 30,849천 원) × 7명 = 194,369천 원 - 9급 → 8급 : (37,564천 원 - 30,849천 원) × 2명 = 13,430천 원
	기능 직	20	○ 소계 : 414,677천 원 - 9급 → 6급 : (67,581천 원 - 32,464천 원) × 3명 = 105,351천 원 - 9급 → 7급 : (59,216천 원 - 32,464천 원) × 9명 = 249,768천 원 - 9급 → 8급 : (38,164천 원 - 32,464천 원) × 7명 = 39,900천 원 - 8급 → 6급 : (67,581천 원 - 38,923천 원) × 1명 = 28,658천 원

○ 물건비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계	182,385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5천원	- 본청 15천원 × 12명 = 225천원 - 출장소 40천원 × 1명 = 40천원 - 사업소 40천원 × 1명 = △40천원 - 읍면동 40천원 × 4명 = 16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천원	- 100천원 × 2명 × 12월 = 2,4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천원	- 350천원 × 2과 × 12월 = 8,400천원
특정업무경비	9,600천원	- 50천원 × 16명 × 12월 = 9,600천원
일반운영비	80,000천원	- 40,000천원 × 2과 = 80,000천원
여비	57,600천원	- 300천원 × 16명 × 12월 = 57,600천원
자산취득비	24,000천원	○ 개인집기 - 1,000천원 × 16명 = 16,000천원 ○ 사무실집기 - 4,000천원 × 2과 = 8,000천원

※ 기구신설에 따른 비용 중 개별 사업예산은 현시점에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추계에서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를 위주로 산정함